

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정책 및 제도

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
남경임 사무관





목 차



1.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제도 개요	1
2.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	5
3. 어린이활동공간 지도·점검 제도	10
4.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제도 관련 10問 10答	14

1.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제도 개요

☐ 어린이활동공간 정의 [p.3~5]

- [가. 어린이놀이기구]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·외의 놀이터, 장소적 요건과 기구적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
 - (장소적 요건) 「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별표2*에 해당하는 시설
 - * 도시공원, 도로 휴게시설, 아동복지시설, 공공도서관, 학원 등
 - (기구적 요건)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* 설치
 - * 그네, 미끄럼틀, 정글짐, 철봉, 모래놀이기구, 볼풀장 등
- [나. 어린이집]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(교실, 거실, 포복실, 유희실 등)
- [다. 유치원]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(일반 교실, 돌봄 교실 등)
- [라. 마.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]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초·중·특수학교의 교실(일반교실, 돌봄 교실, 과학실, 컴퓨터실, 음악실 등) 및 도서관(특수학교 제외)
- [바. 사. 놀이제공 영업소]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 중 붕붕뽀뽀, 미니모험놀이, 미니에어바운스가 설치된 영업소,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(완구만 해당)을 놀이로 제공하는 영업소

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근거 법령 [p.10~12]

- 어린이활동공간 정의(「환경보건법」 제2조제8호 및 시행령 제1조의2)
-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기술 및 재정 지원(「환경보건법」 제20조제2항)
-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(「환경보건법」 제23조제1항내지 제9항)
-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(「환경보건법 시행령」 제16조제1항 (별표 2))
- 확인검사 시기, 방법 및 절차 등(「환경보건법 시행규칙」 제11조의2)
- 어린이활동공간 지도·점검(「환경보건법」 제29조제1항, 시행규칙 제14조제2호)
-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(환경부 고시 제2021-222호, '21.11.8.)

☐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(「환경보건법 시행령」 별표 2) [p.13~14]

구분		항목별 상세 환경안전관리기준
시설물		① 녹이 슬거나 ② 금이 가거나 ③ 페인트 등 도료가 벗겨지지 않아야 함
도료, 마감재	실내·외	① 납, 카드뮴, 수은 및 6가 크롬의 합: 총합량으로 1,000mg/kg 이하 ② 납: 질량분율로 90mg/kg 이하
	실내	① 합성수지 재질 바닥재(표면재료) 프탈레이트류(DINP, DnOP 등 7종) : 총합량이 0.1% 이하 ② 신축 등 확인검사 대상인 경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준수 - 폼알데하이드 0.002mg/m ³ ·h 이하, 톨루엔 0.08mg/m ³ ·h 이하, 총휘발성유기화합물 2.5mg/m ³ ·h(페인트) 또는 40mg/m ³ ·h(벽지) 이하
목재		①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, 2호 및 ② 크롬·구리·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, 2호, 3호를 사용한 목재 사용 금지 (단, 위 기준을 충족하는 도료로 목재표면을 정기적으로 도장하는 경우는 제외)
모래 등 토양		① 납: 200mg/kg 이하, ② 카드뮴: 4mg/kg 이하, ③ 6가 크롬: 5mg/kg 이하, ④ 수은: 4mg/kg 이하, ⑤ 비소: 25mg/kg 이하, ⑥ 기생충란 미검출
합성고무 재질 바닥재 표면재료		① 재료에 들어있는 납, 카드뮴, 수은 및 6가 크롬의 합 : 총합량으로 1,000mg/kg 이하 ②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: 75mg/kg 이하 ③ 프탈레이트류((DINP, DnOP 등 7종)의 총합량 : 0.1% 이하
실내공기질		① 폼알데하이드의 농도 : 80μg/m ³ 이하 ②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 : 400μg/m ³ 이하

※ : 「환경보건법 시행령」 개정 사항('22.4.7. 시행), 시행일 이전 설치 시설 '26.1.1.부터 적용

㉔ 지자체 및 교육청 어린이활동공간 담당자 업무내용 [p.16]

-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이행 여부 확인 및 확인검사 이행 명령(확인검사 미이행 시)
- 어린이활동공간 지도·점검 및 시설 개선 명령(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 시)

㉕ 어린이활동공간 시험·검사 기관 역할 및 현황 [p.83, 84]

- [역할]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시험·검사
 -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및 지자체 등 감독기관 지도·점검 시 기본 및 정밀검사 실시
- [현황] ▲국립환경과학원(당연 기관), ▲시·도 보건환경연구원(당연 기관), ▲비영리법인*

* 어린이활동공간 비영리 시험검사 기관 현황('23.6월 기준)

번호	기관명	소재지	전화번호	지정연월일
제1호	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	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	02-2102-2608	2012.11.14
제2호	(재)FITI시험연구원	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21	043-711-8868	2013.04.05
제3호	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	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115번길 74	031-428-3817	2013.05.15
제4호	한국환경산업기술원	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	02-2284-1656	2013.11.07
제7호	대한산업안전협회	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	02-860-7150	2015.02.16
제9호	(재)한국환경수도연구원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8사길 29	02-2637-1234	2017.05.29
제10호	(사)에스이엘 안전기술원	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63-12 동탄비즈타워 1007호	031-601-9144	2023.06.21

2.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

☐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 개요 [p.18~20]

- [확인검사 제도 도입] 2014년 9월
- [확인검사 대상 시설] 「환경보건법」 상 모든 어린이활동공간
- [확인검사 시기]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, 연면적 33 m² 이상 증축한 때, 70 m² 수선 한 후 30일 이내
 - * 도료, 마감재료, 합성수지·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
- [확인검사 신청자]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
- [확인검사 실시 기관]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시험·검사 기관
- [확인검사 결과 접수 및 합격 여부 판단 기관] 지자체 및 교육청

내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[p.21~23]

순서	구분	업무 내용
①	어린이활동공간 신축, 증·수선 완료 (소유자 또는 관리자)	-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, 증축 또는 수선한 후 30일 이내에 확인검사를 받아야 함. · 여기서 신축이란 토목, 건축, 전기 공사와 같은 물리적 공사가 완료된 완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축물 사용을 승인하는 준공 이후 30일이 아님.
②	확인검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(소유자 또는 관리자)	-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맞춰 확인검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시험·검사 기관에 확인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.
③	확인검사 신청서 접수 (시험·검사기관)	- 확인검사 신청서 접수처는 시험·검사기관으로 지자체 및 교육청은 확인검사 신청서 접수 기관이 아님.
④	현장 방문 및 확인검사 실시 (시험·검사기관)	- 시험·검사기관은 확인검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검사 (간이 및 정밀검사)를 실시하여야 함.
⑤	채취 시료 분석 (시험·검사기관)	- 시험·검사기관이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시험·검사기관 내 시험실에서 분석(정밀검사)함.
⑥	확인검사 결과 증명서 통보 (시험·검사기관)	- 시험·검사기관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 확인검사 결과 증명서(결과)를 작성한 후 이를 확인검사 신청인(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등)과 관할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 송부함.
⑦	확인검사 결과 분석 및 종결 (관할 지자체 및 교육청 담당 부서)	- 시험·검사기관이 제출한 확인검사 결과를 분석한 후,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이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한 경우라면 확인검사를 종결처리하고,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면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등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할 때까지 시설개선을 명령하는 등의 사후 조치를 취하여야 함.

㉔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부적합 시 조치 절차 [p.23]

순서	구분	업무 내용
①	시설 개선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명령 (관할 지자체 및 교육청 담당 부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환경보건법」제23조제8항에 따라,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등은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, 감독기관은 동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, 확인검사에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한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적합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령하여야 함. - 확인검사 업무 담당 부서와 어린이활동공간 인허가 담당 부서가 다른 경우, 확인검사 업무 담당 부서는 부적합 확인검사 결과를 시설물 인허가 부서에 전달하여 해당 시설이 사용승인 (준공)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.
②	개선 명령 이행 및 이행보고서 제출 (소유자 또는 관리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등은 관할 지자체 또는 교육청의 시설 개선 명령을 이행하고 감독 기관에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 이행보고서(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참조)를 작성·제출하여야 함. 이행보고서 제출 시 개선된 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했다는 시험·검사 기관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 증명서(시험·검사 결과 증명서)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.
③	개선 명령 이행결과 접수 및 종결 (관할 지자체 및 교육청 담당 부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할 지자체 또는 교육청이 시설 개선을 명령한 곳이 실제 개선되었는지, 환경안전관리기준은 준수했는지 등을 서류 및 현장을 확인한 후 확인검사 종결처리 여부를 결정함. 시설이 개선이 이루어지 않았고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했다면 ①번 절차부터 시작함.

☐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미이행시 조치 절차 [p.24]

순서	구분	업무 내용
①	확인검사 미이행 확인 (관할 지자체 및 교육청 담당 부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어린이활동공간 지도·점검 진행 중에 해당 공간이 확인검사를 받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함. -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의 자발적 확인검사 미이행 신고를 통해 확인함.
②	확인검사 이행명령 (관할 지자체 및 교육청 담당 부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할 지자체 또는 교육청은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소유자 등에게 확인검사 받도록 명령하여야 함. (명령서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5서식 참조) - 확인검사 명령 시 20일 범위에서 확인검사를 받도록 하며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2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.
③	확인검사 이행 (소유자 또는 관리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등은 시험·검사기관에 확인검사를 신청함. - 시험·검사기관은 확인검사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확인검사를 실시함.
④	확인검사명령 이행보고서 제출 (소유자 또는 관리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확인검사명령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 등은 그 명령을 이행한 후 확인검사 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할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함.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명령 이행보고서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6서식 참조
⑤	확인검사 이행명령의 이행상태 확인 및 종결 (관할 지자체 및 교육청 담당 부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할 지자체 또는 교육청은 확인검사명령 이행기간이 끝나거나 어린이집 원장 등으로부터 확인 검사명령 이행보고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확인검사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함. - 감독기관의 확인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, 법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. - 확인검사명령을 이행했으나, 이행상태가 부적정한 경우, '다.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부적합 시 조치 절차'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.

☐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제외 대상 [p.26, 57]

- [환경표지 인증 자재 사용]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, 마감재료, 합성수지·고무 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을 증축·수선한 시설, 신축시설은 환경표지 인증 자재 사용과 상관없이 확인검사 대상임
- 증축한 경우에는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게 증축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, 수선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*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함.
 - * 환경표지 인증 제품 구매 내역서, 시공 시 환경표지 인증 제품 견본 또는 제품 잔여분, 시공 전 후 사진 등 구매 내역서에 기재된 인증 제품으로 시공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
 - ※ ① 환경표지 마크가 붙어 있는지, ② ‘유해물질 감소’가 인증사유인지, ③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였는지 확인 필요

3. 어린이활동공간 지도·점검 제도

☐ 어린이활동공간 지도·점검 제도 개요 [p.30~32]

- [지도·점검 제도 도입] 2009년 3월
- [지도·점검 대상 시설] 「환경보건법」 상 모든 어린이활동공간
- [지도·점검 주기] 없음

□ [지도·점검 기관] 기초 지자체 및 교육청 (이하 ‘감독기관’)

□ [시료 채취 및 분석 지원] 환경유해인자 시험·검사기관(7개), 시·도 보건환경연구원, 국립환경과학원

☐ 지도·점검 면제 항목 [p.34]

□ [중금속 및 프탈레이트류] ①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, 마감재료, 합성수지·고무 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, 증축·수선한 경우*, ② 신축 확인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후, 일체의 증·수선 행위가 없는 경우. 다만, 증·수선 행위가 없더라도 시설 노후화 등으로 환경유해인자 노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지도·점검 대상임

* ① 환경표지 마크가 붙어 있는지, ② ‘유해물질 감소’가 인증사유인지, ③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였는지 확인 필요

□ [목재방부제]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하여 목재 표면을 정기적으로 도장하는 경우

□ [실내공기질]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상 유지기준(최근 1년 이내) 및 권고기준(최근 2년 이내)을 준수한 430제곱미터 이상의 어린이집 및 어린이놀이시설

※ 서류 확인 등을 통해 해당 항목에 대한 지도·점검 면제가 가능하며, 시설 전반에 대한 지도·점검 면제가 아님

태 어린이활동공간 지도·점검 절차[p.35]

순서	구분	업무 내용
①	지도·점검 대상 어린이활동공간 선정 (감독기관)	- 수년간 지도·지도점검 이력이 없었거나, 과거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한 이력 등이 있어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어린이 건강피해 우려가 높은 어린이활동공간을 선정함.
②	현장방문 및 지도·점검 실시 (감독기관)	- 「환경보건법」 제29조제1항에 따라, 어린이활동공간 지도·점검을 실시함. - 감독기관 담당자(공무원)만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 · 시료를 채취하고 봉투에 밀봉한 후 시험·검사기관에 이를 의뢰하여야 함. - 관리·감독기관 담당자(공무원)가 시험·검사기관과 동행하는 경우 · 시험·검사기관 담당자가 시료를 채취하고 이를 밀봉한 후 시험·검사기관으로 가져감. ※ 시료 채취 시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·날인한 후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등에게 사본을 전달하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함.
③	채취 시료 분석 (시험·검사기관)	- 우선 중금속 간이측정기(XRF)를 이용하여 간이검사를 실시하고, 간이검사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벽지 등은 정밀검사를 위해 시료채취함. 다만, 프탈레이트류, 토양, 실내공기 오염 물질은 바로 정밀검사(시료채취)를 실시함. -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 여부를 시험·검사기관 內 시험실에서 분석(정밀검사)함.
④	지도·점검 결과 송부 (시험·검사기관)	- 시험·검사기관이 채취한 시료의 분석(정밀검사)이 완료되면 시험·검사기관은 지도·점검 결과를 감독기관에 송부함.
⑤	지도·점검 결과 분석 및 종결 (감독기관)	- 시험·검사기관이 제출한 지도·점검 결과를 분석하였을 때,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한 경우라면 해당 시설에 대한 지도·점검 업무를 종결처리 함. - 기준을 초과했으면,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등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할 때까지 시설개선을 명령하는 등의 사후 조치를 취하여야 함.

Ⅲ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결과 불합격 시 후속 절차 [p.36]

순서	구분	업무 내용
①	시설 개선 및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명령 사전 통지 (감독기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감독기관은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등에게 문제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명령(처분)을 하기에 앞서 「행정절차법」제21조제1항에 따라, 처분 사전통지를 하여야 함. - 아울러, 지도·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전 통지를 하고,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함.
②	피검사자 의견 접수 (감독기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한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여, 타당한 경우 처분 취소* 처리하고, 타당하지 않은 경우 시설 개선 명령 등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함. * 처분 취소 결정 前 해당 시설을 검사한 기관과 시험·검사 결과 및 현장 방문 당시의 현장 상황 등을 논의하는 등 피검사자의 의견이 타당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.
③	시설 개선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명령 (감독기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, 해당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령하되,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야 함.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. - 시설 개선 및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명령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맞게 작성한 후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.
④	시설 개선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명령 이행 (소유자 또는 관리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할 지도·감독기관의 이행 명령을 준수하여야 함. -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등은 개선 조치 후 검사 결과 등을 통해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명령 이행을 증명하여야 함. * ex) 실내공기질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명령을 받은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 개선 조치 후 시험·검사기관에 실내공기질 검사를 의뢰하여 검사 결과를 제출함으로써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명령 이행을 증명하여야 함.
⑤	개선 명령 이행여부 확인 및 종결 (감독기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할 감독기관은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등으로부터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접수한 후 개선 명령 이행여부를 실제 확인(현장 방문, 검사기관 검사결과 보고서 검토 등)하여야 함. - 개선 명령을 이행한 경우, 해당 시설에 대한 지도·점검업무를 종결처리함. - 이행하지 않은 경우,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, 고발 조치하고 ①번 절차부터 다시 시작함.

4.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제도 관련 10問 10答 [p.50~72]

1. 어린이활동공간 중 어린이놀이기구의 경우는 시설 범위가 매우 넓은데, 어떤 시설들을 말하는 것인가요?

- 어린이놀이기구는 장소적 요건과 기구적 요건을 둘 다 갖춘 시설을 말합니다.
- 즉, 도시공원, 아동복지시설, 주택단지 놀이터 공공도서관, 하천시설, 박물관 등 행안부에서 규정한 20개의 장소에 그네, 미끄럼틀, 정글짐, 볼풀장 등 산업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중 어린이놀이기구에 해당하는 제품이 설치된 시설을 말합니다.

2.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같은 경우 교실만이 어린이활동공간에 해당되던데, 이 교실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요?

- 교실이란 어린이가 정규 수업을 받는 공간을 의미합니다. 보통교실과 특별한 목적을 가진 특별교실이 해당됩니다.
- 특별교실의 경우 과학실, 음악실, 미술실, 기술실, 컴퓨터실, 영어학습실, 시청각실 등이 있습니다.
- 다만, 상담실, 보건실, 급식실, 행정실 등과 같은 수업이 목적이 아닌 공간은 교실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3.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 주체는 누구이며, 이러한 확인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?

-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 주체는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며,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검사기관 중 한 곳에 확인검사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.
- 즉, 신청 주체는 어린이집 원장, 유치원 원장, 초등학교 교장 등(시설의 장)이 되겠으며, 감독기관 담당 공무원은 확인검사 신청 주체 및 확인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.

4.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무엇인가요?

-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조건이 어느 한계까지만 안전할 때 그 한계가 되는 값으로 중금속 안전기준, 실내공기질 안전기준, 토양 안전기준, 목재 방부재 안전기준 등이 있습니다.
- 감독기관은 관할 어린이활동공간 지도·점검 시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나 소유자 등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- 그리고 시험·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검사 결과증명서가 접수될 때도 해당 시설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.

5. 내외부 시설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대표자가 변경되었거나, 관리주체(민간 → 국공립)가 변경된 경우에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나요?

- 과거에 확인검사를 받은 이력(합격)이 있거나 지도·점검에서 합격한 시설로 단순히 대표자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라면 이를 신축 시설로 보지 않기 때문에 확인검사 대상이 아닙니다.
- 하지만, 시설 노후화로 인한 환경유해인자 노출이 우려된다고 판단하면 감독기관은 다가오는 지도·점검에 해당 시설을 포함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.

6. 기본검사는 무엇이고 정밀검사는 무엇인가요?

- 기본검사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거나 중금속간이측정기(XRF)를 활용하는 검사를 말하며, 정밀검사는 시료를 직접 채취하고 채취한 시료를 시험실에서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도료(페인트)나 마감재료는 보통 기본검사 후 정밀검사가 진행되며, 프탈레이트류, 토양, 실내공기질 오염물질은 바로 시료를 채취하기 때문에 정밀검사가 진행됩니다.

7. 어린이활동공간 지도·점검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?

- 「환경보건법」에서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지도·점검 주기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
 - 다만, 제23조제4항에서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키도록 그 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에, 감독기관은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실제 지키고 있는지를 수시 또는 일정 기간마다 동 법 제29조에 따라 지도·점검 행위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.
- 감독기관은 환경부에서 개발한 ‘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 전산관리시스템’을 활용하여 관내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그간의 지도·점검 이력을 확인하고,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 필요성이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지도·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.

8. 초등학교 신축 현장입니다.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부분 완공된 현장입니다. 부분 완공된 시설에 한하여 확인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?

- 원칙상 불가능합니다.
 - 다만, 시설별 준공시점이 크게 달라 일부 시설에 대해 감독기관이 사용 승인할 예정인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되었다면, 부분 완공된 시설은 확인검사가 가능할 것입니다.

9. 어린이놀이기구에 칠해진 도료가 벗겨지거나, 금이 간 경우도 「환경보건법」 상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?

○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- 어린이놀이기구는 행정안전부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적용 대상으로 어린이놀이기구 훼손 및 어린이놀이기구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에 관한 조사는 「환경보건법」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.
- 다만,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바닥재의 경우 「환경보건법」 상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대상입니다.

10. 기본검사 결과(부적합)만으로 시설 개선을 명령할 수 있나요?

○ 기본검사인 육안(맨눈)으로 시설의 훼손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곳은 기본검사 결과만으로 시설 개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.

- 환경안전관리기준 제1호부터 제6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육안(맨눈)으로 충분히 시설의 훼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속에서 녹이 발생했거나, 도료의 벗겨짐, 시설물 크랙(금) 같은 경우는 위 제1호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설 개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.